

# 성저초등학교학생생활규정

2010.11.30. 개정  
2011.05.16. 개정  
2011.11.28. 개정  
2015.04.29. 개정  
2019.09.17. 개정  
2021.11.11. 개정  
2022.12.12. 개정  
2023.10.25. 개정  
2024.4.11.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성저초등학교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고시 제 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 2 장 학생생활

### 제 1 절 교내생활

제4조【기본품행】

- ①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교내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파손시키지 않으며, 남의 물건의 파손 및 손해에 대해서는 학생의 보호자가 변상조치 한다.

### 제7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 ① 학생 상호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처리에 있어, 학생들끼리의 문제해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② 학생은 상호간의 존중을 원칙으로 생활하며, 상호간의 물리적 폭력행사 및 언어적 위협을 금한다.

### 제8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남녀학생들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 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 제9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②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 제10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복장은 계절에 맞고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 ②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안전한 것으로 착용하며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신도록 한다.
- ③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편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한다.
- ④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1조【학급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항과 같다.

- ①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2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학생활동을 하고자 할 때, 해당학생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13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의사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 제15조【소지 금지 물품 검사】

- ①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흉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학생이 제1항의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 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 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 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보호하거나 보호자·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제5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 ⑦ 학생생활지도(흡연등)를 목적으로 한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 ⑧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 제 2 절 교외생활

제16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하며 학교교직원 또는 학생 상호간에 예의를 표한다.
- ②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⑥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⑦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17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 ③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 제 3 절 정보통신

**제18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및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을 금하고 불법 유해 매체를 접근하지 않는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19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며 휴대전화 관리에 대해서는 학급 내 합의 과정을 통하여 정한다.
- ②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및 각종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하며,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 단, 교육 활동을 위해 교사가 필요하다고 여겨 사용이 허락된 기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④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통신기기를 활용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배포를 금한다.

**제20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제21조【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생활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 게시판에 공지하여 둔다.
- ② 학교는 학생생활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한 후 30일 내에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 4 절 학생자치회

제22조【회원】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 - 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23조【권리 및 의무】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4조【참여활동】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의 참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생은 학교 운영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학생대표(학생자치회)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5조【협의.지원사항】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생 연구활동
-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
- ④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 ⑤ 자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자치회 임원을 통하여 공지하고 게시판이나 학교방송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26조【반영】

- ① 학생자치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은 학교운영에 반영여부를 학교장이 판단한다.
- ② 학생들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회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아침방송을 통하여 결정사항을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다.
- ③ 학생자치회에서 의결 결정된 게시물은 정해진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27조【학급회 임원】**학급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급어린이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 ② 각부의 부장 1인, 서기 2인

**제28조【부서】**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①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운영을 위한 부서
- ②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운영을 위한 부서
- ③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운영을 위한 부서
- ④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운영을 위한 부서
- ⑤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운영을 위한 부서

**제29조【직무 및 선출】**

- ①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 -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0조【학생자치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학생자치회**를 둔다.

- ① 구성
  - 1. 회장, 부회장 및 4 - 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 ② 기능
  -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2.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회의
  - 1. **학생자치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3. 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 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

정할 수 없다.

## 제 3 장 학생생활교육

### 제 1 절 생활교육

**제31조【안전교육】**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진로교육】**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할 수 있다.
-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생활교육 방법】**

- ① 학교는 학생이 전인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전 교사가 서로 협조하여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의 질서유지와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분	항	내 용
수업	(1)	수업 준비와 태도가 불량한 학생 및 상습적 수업 준비 미비 학생
	(2)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3)	수업을 거부한 학생
생활 예절	(1)	언어 예절이 바르지 못한 학생
	(2)	폭력, 과도한 장난을 하는 학생
	(3)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
	(4)	학교(학급)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

- ③ 생활교육 방법은 성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5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생활교육 규정을 따른다.



**제34조【학생생활교육 프로그램 적용】**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에 대하여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삭제)

- ① 담임교사가 부여하는 과제 이행하기
- ② 교사와 학생이 협의하여 학급 규칙으로 정한 활동
- ③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5조【교외생활 교육】**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 제 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6조【학생생활교육의 정의】**

새 학교 문화창조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그동안 학생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잘못에 대한 체벌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던 관습을 없애고 교육적인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7조【본교 학생 생활교육의 원칙】**

- ① 학생 생활교육은 어떤 경우에서나 학생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 ② 학생·학부모에게 충분한 자신의 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선형학생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선형포상으로 사기를 앙양시키고, 생활교육을 요하는 학생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도록 지도하고 책임정신을 기르도록 교육한다.
- ④ 징계는 평소 품행과 생활환경 그리고 학교에서의 지도 과정을 참작하여 교육적인 면을 중시한다.
- ⑤ 학생의 징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제38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인권부장(담당)이 되며, 위원회 업무 담당위원이 간사를 겸임한다. 위원은 각 학년군에서 1명, 특정학생에 대한 생활교육대책을 협의할 때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담임을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학생들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및 분쟁, 학교규칙 위반 등의 경우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

거하여 시행한다.

**제39조【본교 학생 생활교육 대상자】**생활·인권 교육 대상이 되는 학생 선정은 다음의 각 항을 기준으로 한다.

- ① 학습권 침해(수업방해, 학습 지시사항 거부 및 과제 상습 불이행)
- ② 학교 기물 또는 구성원의 물건 파손, 절도
- ③ 기타(게임, 인터넷, 음란물, 휴대전화 중독, 흡연 및 음주, 약물 오남용)
- ④ 부모에 의한 사안 접수
- ⑤ 학생이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질러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 ⑥ 생활태도 개선의 기회를 주었으나 개선의 여지가 부족한 경우

**제40조【학생 생활교육의 절차와 방법】**생활·인권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단계별 교육 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생활교육 대상이 된 학생은 자신을 특정한 문제 있는 학생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고 문제의 사태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
- ② 생활교육 대상이 된 학생을 수업 중 조사, 비자발적 진술 강요 등 일방적, 자의적 조사를 금지한다.
- ③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처리한다.
  1. 교내봉사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2. 사회봉사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3. 특별교육 이수(총 30시간 이내)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 이때 출석정지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기간 또는 30일이 경과한 뒤에 문제 행동을 일으킬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41조【학생 생활교육의 결과 처리】**

- ① 생활교육을 할 경우에는 일정한 양식에 상담한 결과를 기록하도록 한다.
- ② 생활교육 학생의 상담 및 생활교육 내용, 징계 내용은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생활교육 및 징계가 확정되면 학생 보호자에게 생활교육 및 징계 내용을 서면 통보한다.

**제42조【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재심의 제기 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생활교육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의 절차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단 계	내 용
재심의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교육 의결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의 제기를 할 수 있음.</li> <li>•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재심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함.</li> </ul>
재심의 여부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위원회에서 재심의 여부를 검토·심의</li> </ul>
재심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2일 이내에 재심의 를 결정</li> </ul>
재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심의</li> <li>•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li> <li>-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원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li> </ul> </li> </ul>
학교장 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통보 → 생활교육 시행</li> </ul>

#### 제44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소홀한 가정지도의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에 힘쓴다.

## 제 4 장 학생생활규정 개정 방법

제45조【학생생활규정심의위원회 구성 원칙】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 원칙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① 위원회는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인원을 정하고,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 ②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 ③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46조【위원회 구성 방법】본 위원회의 구성 방법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①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

한 교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인권.시민 단체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 넓게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위원회 역할】**본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①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한다.
- ②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을 결정한다.
- ③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을 주관한다.
- ④ 개정 시안을 수립한다.
- ⑤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와 홍보를 한다.
- ⑥ 기타 학교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8조【위원회 운영】**본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 ②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개정안 발의】**개정안 발의 방법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

4. 전교어린이회 대표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0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본 위원회의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방법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1조【심의 및 결정】**본 위원회에서의 개정안 심의 및 결정 방법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2조【공포 및 정보공시】**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53조【연수 및 교육】**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54조【기타】**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 제 5 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 규정

### 제 1 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55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②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③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④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 2 절 생활지도의 방식

### 제56조【조언】

- ①“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57조【상담】

- ①“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⑥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는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⑧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⑨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8조【주의】

- ①“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제59조【훈육】

- ①“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⑥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⑦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 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제1호	대상 : 수업방해행동학생 교사가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또는 지정된 위치(교실 뒤편, 사물함 앞, 강당 뒤편 등)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수업 시간 내 일부)	-지정된 좌석 또는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단, 실외 공간일 경우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 위치를 교사가 정할 수 있음. -수업 시간 내 일정 시간 동안 분리 후 복귀	필요 없음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제2호				
제3호	1. 제1호 또는 제2호 지도를 거부하거나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2.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이나 다른 학생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교무실 등 교감(교사)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또는 문제해결 시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학교의 장은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보호자에게 통지	행동성찰문 쓰기, 교과서 요약 등 학생 수준에 맞는 과제 부여
제4호	1. 제1호~ 제3호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2.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교실 등 지정 장소 (문제 해결 시까지)	-학교의 장은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보호자에게 통지	행동성찰문 쓰기 등 학생 수준에 맞는 과제 부여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교사 1~2호 : 담임교사 / 3~4호 : 학생을 인계한 교직원(교감 등)				

- ⑧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⑨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에 해당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⑩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⑪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⑫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



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물품 분리 방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59조 1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휴대전화, 정보통신기기(녹음기) 등)	수업시간	교실내 지정 장소	1회차 : 주의 실시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 지정 장소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장에게 신고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 사용을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⑬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⑭학급 담임교사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60조【훈계】**

①“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③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④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 **제61조【보상】**

- ①“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 **제62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3조【이의제기】**

- ①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제64조【기타 사항】**

- ①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 6 장 부칙

**제65조【본 규정의 적용 및 효력 발생】**본 규정의 적용과 효력 발생은 본교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시한 시각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6조【학년별 생활규정의 개정】**학년별 생활규정의 내용은 학년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67조【규정개정 절차】**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는 학생생활규정 개정규정안과 개정심의위원회 운영 방안에 따른다.

**제68조【기타 사항】**이 개정은 학생생활지도고시에 따른 규정을 반영한 개정으로 반영 내용과 기존 규정이 상충될 때 고시 내용이 우선한다.